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①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합	⑰ 익명조합	⑱ 합자조합

②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㉑ 법인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배 당 액 현 황	㉓ 배당받은 날짜		㉔ 배당받은 금액		㉓ 배당받은 날짜	㉔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금액 합계					

③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업자			㉔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㉓ 성명 (법인명)	㉕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㉖ 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⑬ · ⑭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⑮ · ⑯란에는 동업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⑰ · ⑱ · ㉑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㉒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